

“산업건설위원회”의안심사보고

제출일자 : 1996년 12월 24일

발 의 자 :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해룡

1. 파주시주차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1996년 12월 18일(파주시장)

나. 회부일자 : 1996년 12월 21일

다. 상정일자 : 1996년 12월 21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본회의】

상정, 제안설명

1996년 12월 23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검토보고, 자체심의, 질의·답변

1996년 12월 24일 【제8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

의 결

2. 제안설명요지

(제안설명자 : 건설도시국장 백성기)

가. 제안이유

- '96. 6. 4 주차장법시행령 및 '96. 6. 29주차장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실에 맞는 주차장법을 운용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부설주차장의 설치시설물 및 설치기준을 강화하였고
-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를 직선거리 300미터이내에서 직선거리 50미터이내 또는 도보거리 100미터 이내로 개정하였으며
-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산정기준을 당해토지 평가금액에서 주차에 사용되는 시설의 총설치 비용으로 기준을 변경하였고
- 부설 주차장 설치기준중 지체부자유자 전용주차장을 부설주차장 주차대수 10대당 1면이상 설치하는 내용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요지

(전문위원 : 박헌재)

- 동조례개정안 제안취지와 같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도심주차난과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서 건축물 부설 주차장의 설치기준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되나,
- 기존의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경우를 보면 좁은 공간에 무리하게 기계식 주차장 등을 설치하여 설치기준에 따른 준공절차를 거친후 이용치 않고 방치하여 건축물 인근의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사례가 허다하고,
- 아예 주차공간을 타용도로 불법전용하는 경우도 있음을 중시하여 설치기준의 강화도 물론 필요한 것이나 철저한 사후관리를 위한 제도적 또는 행정적 조치가 더욱 절실하다 하겠음.
- 또한 주차장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지역의 건축신축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 받도록 되어 있는 조례안 제21조의 규정을 검토해 보건데,
- 비용납부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비용부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없어 실현이 불가능한 제도라고 보여져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4. 질의·답변요지

질)금촌시내 일방통행 구도로의 흰색으로 두줄을 그어놓은 것은 어떤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답)효과적인 주차난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서 경찰서와 협의해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임.

질)홀·짝수 주차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답)주민에게 적극 홍보하고 단속 계도하여 효과적인 시책이 되도록 하겠으며 좋은 시책이라고 판단되면 다른 지역에도 점차 추진해 나가겠음.

질)건축신축시 부설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건물에 대하여는 설치비용을 시에 납부하고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받도록 되어있는데 앞으로 비용부담자가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 사용할 수 있는 대책방안을 강구했는지?

답)아직 검토한 적이 없음. 앞으로 검토하겠음.

질)개인소유의 공유주차장을 임대해서 건물신축시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

답)부설주차장으로 지정된 것을 제외한 개인소유의 공유주차장을 임대하여 이용할수 있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집행기관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